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기업 대상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의 지능형 헬스케어 기업 대상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1 지원 개요

- 사업명: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전국 소재의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6. 10. 30.(금)까지
- 지원내용
 - 국내 기술 특허출원 1건 및 IP 전략 보고서 1식 지원(2개 사)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1건 지원(2개 사)
- 지원대상: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4개 사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제품 분류 예시>

구분	유망 품목
개인건강기기	혈당 측정계, 혈압 측정계, 심전도 측정계, 체성분/체지방 측정계 등
웰니스 기기	게이트웨이, 웰니스 기기, 웨어러블 단말기 등
건강 정보 앱	웰니스 앱, 의학적 정보 제공 앱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앱	개인건강기록(PHR) 앱, 병원기록 관리 전용 앱, 피트니스 또는 운동 관리 앱 등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 관리 서비스, 의료용 기능성 게임 서비스 등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상담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진료 시스템/솔루션 등
의료정보 플랫폼/솔루션	의료정보 플랫폼 등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등
기타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

2

지원 내용

□ 상세 지원 내용

가. 국내 기술 특허출원 1건

○ 국내 특허출원 절차

- 발명자 미팅 및 발명 내용 정리 → 선행기술조사 → 청구범위 확정 및 명세서 작성(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 기술, 발명의 내용 등 상세 기재) → 특허청 제출 및 심사 청구

나. IP 전략 보고서 1식

○ 보고서 주요 구성 내용

번호	주요 목차	구성 내용
1	기업 및 기술 현황 분석	기업 개요 및 사업 단계, 핵심 기술 개요 및 원리 등
2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유사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3	특허성 및 권리범위 분석	핵심 기술의 신규성·진보성 검토, 청구항 설계 방향
4	IP 출원 전략	국내외 특허출원 시점 및 전략과 진입 대상국 제안
5	경쟁기술 및 특허 동향 분석	주요 경쟁사 및 유사기술 특허 동향 분석
6	IP 활용 전략	기술 이전·라이선스 가능성, 투자유치/정부 R&D 활용 등

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1건

○ PCT 국제출원 절차

- 국제출원(국제사무국에 출원서 등 제출) → 국제조사(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 국제공개(국제출원서류 일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 (선택) 예비심사(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판단) → 국내단계 진입 → 각국 심사

※ (PCT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3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예비심사 → 선정심사 → 결과발표

선정공고 및 접수	→	예비심사	→	선정심사	→	선정기업 발표
(사)범부처통합 헬스케어협회		(사)범부처통합 헬스케어협회		(사)범부처통합 헬스케어협회, 외부		(사)범부처통합 헬스케어협회
6. 16. ~ 6. 26.		6. 26. ~ 6. 29.		6. 30.		7. 2.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기업에 E-mail로 개별 안내 예정

4 선정 방법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비심사(1차)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심사(2차) : 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등 평가

□ 선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업체 선정

- 지원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세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아래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평가 항목		배점
지원기업 적합성 (20점)	◦ 신청서 작성 및 성실도 반영	10
	◦ 신청 기업의 적극성(자료 준비 등 성실 이행 여부)	10
기업 경쟁력 (30점)	◦ 서비스/제품의 차별성 및 구현 가능성	10
	◦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보유(국내외 인증서) 및 확장 가능성	20
지원 필요성 (20점)	◦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10
	◦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10
지원 적정성 (20점)	◦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10
	◦ 서비스/제품의 사용용도 명확성 및 적정성	10
기대효과 (10점)	◦ IR 자료 내용	5
	◦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 가능성	5
우대가점 (5)	◦ 부산지역 내 기업(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	5

□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라'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다.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라.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마.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바.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④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⑤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 ⑦ 기타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6. 16.(화) ~ 2026. 6. 26.(금) 16:00까지

□ 신청방법: 공고문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메일로 서류 제출

- 협회 홈페이지 공고 안내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준비하여 이메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서식1
	세부계획서	서식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4
	성실이행동의서	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회사소개 자료 및 IR 발표자료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지원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서 사본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해당 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출 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KGMP 인증서	
선택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업 증빙자료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의양식 사용 불가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파일명 수정하여 제출 요망: [사업명] 신청일자_기업명

예시) [지능형] 20260601_홍길동컴퍼니

□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접수처(이메일)	전화번호
(사)범부처통합 헬스케어협회	기획본부 기획5팀	choyj@kothea.or.kr, yekg08@kothea.or.kr	02-6264-9494

유의사항

- 본 프로그램은 지원주체*에서 전문가에게 비용이 지원되는 지원사업으로 참여 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지원주체: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KoTHEA)

- 평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는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함

 의무사항

- 선정된 기업은 산업통상부 및 본 사업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들은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